

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악사그린디지털증권투자신탁[주식]

(변경 전: 교보악사Neo가치주증권투자신탁2호[주식])

나. 변경 시행일 : 2020년 8월 21일

다. 변경 내용 :

- 명칭변경 (교보악사Neo가치주증권투자신탁2호[주식] → 교보악사그린디지털증권투자신탁[주식])
- 모투자신탁 명칭변경 반영 및 BM삭제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박화진 → 홍기석, 이지윤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
- 전자증권법 시행('19.9.16.)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'교보악사 Neo가치주 증권투자신탁 2호[주식]'이라 한다. ②~④ <현행과 동일>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. <현행과 동일> 3. <u>교보악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⑥ <이하 생략>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'교보악사그린디지털증권투자신탁[주식]'이라 한다. ②~④ <현행과 동일>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. <현행과 동일> 3. <u>교보악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⑥ <이하 현행과 동일>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<u>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</u>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<u>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</u>
제14조(수익자명부)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

	<p>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실질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실질수익자</u>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“<u>실질수익자명부</u>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</u>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⑧ 현행과 동일</p>	<p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수익자</u>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</u>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⑧ 현행과 동일</p>
<p>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</p>	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 ~③ <현행과 동일> ④ <신설></p>	<p>① ~③ <현행과 동일>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, 변경절차,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·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 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①~⑥ <현행과 동일>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</p>	<p>①~⑥ <현행과 동일>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</p>

	제2항 제1호 및 제 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~⑫ <이하 현행과 동일>	항 제1호 및 제 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~⑫ <이하 현행과 동일>
--	--	--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집합투자기구 명칭	<u>교보약사Neo가치주증권자투자신탁2호[주식]</u>	<u>교보약사그린디지털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u>박화진</u>	<u>홍기석, 이지윤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<u>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</u> <u>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자투자신탁 2호 [주식]</u>	<u>교보약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<u>교보약사그린디지털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명칭 (2)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(2)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	<u>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</u>	<u>교보약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(2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	① <u>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-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 70%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. -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	① <u>교보약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</u> -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 70% 이상을 한국형 뉴딜기업, 기술혁신 기업, 턴어라운드 기업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 ▶운용전략

	<p>재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발굴하고 각 종목이 목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① 분기실적, 투자발표, 시설투자, 산업 뉴스,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Macro 변수 등 실제 발표된 Fact(사실)에 기초하여 투자 Universe(종목 후보군)을 발굴</p> <p>② '①'의 Fact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장기적 관점의 기업별 내재가치를 산출하여 저평가된 약 6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</p> <p>- 분산투자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, 상대적 투자매력도, 기업의 핵심경쟁력, 거래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결정한다.</p> <p>- 종목매도는 해당 종목이 목표가치에 도달하였거나,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우, 기업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하거나,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발생할 경우로 한다.</p> <p>※하단 [별첨 1] 참고</p>	<p>1)한국형 뉴딜기업: 편입비 50~60%수준 ·정부의 투자가 집중되는 한국형 뉴딜 기업에 투자 ·디지털 뉴딜: 5G, AI, 비대면 산업등 ·그린뉴딜: 풍력, 이차전지, 수소 연료전지, 태양광 등</p> <p>2)기술혁신기업: 편입비 30~40% 수준 ·기술혁신을 이루어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 ·기술혁신형:소재국산화, 신소재개발, 신제품 개발 ·트렌드형: 온라인 플랫폼, 온라인결제, 바이오(인구 고령화)</p> <p>3)턴어라운드기업: 편입비 0~20% 수준 ·가치주로 분류된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에서 M&A 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업</p> <p>▶투자 프로세스</p> <p>1) 향후 6 개월안에 신규로 등장할 혹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이벤트 및 키워드 선정</p> <p>2) 키워드 관련 수혜주 탐방 및 관련 산업의 성장성 분석</p> <p>3) 섹터 담당자와 추려진 수혜주 중 투자종목 선호도와 관련 리스크 점검</p> <p>4) 편입비중과 시기결정</p> <p>5) 투자종목 선발</p> <p>※하단 [별첨 2] 참고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나. 위험관리</p>	<p>①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p>	<p>①교보약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다. 수익구조</p>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<u>교보약사 Neo가치주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및 <u>교보약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 모투자신탁 2호(채권)</u>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, 국내 주</p>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<u>교보약사 그린디지털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u> 및 <u>교보약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 모투자신탁 2호(채권)</u>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, 국내 주</p>

	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.	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라. 비교지수	<p>라. 비교지수 : (KOSPI 지수 * 90%) + (KOBİ Market Index ^{주1)} * 5%) + CALL 5%</p> 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KOSPI(한국종합주가지수)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. 상기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산출기관의 상황,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</p> <p>주1) KOBİ Market Index는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채권지수로, 40개의 유동적인 종목으로 국내 채권시장을 tracking하도록 설계되었다. 종합채권지수의 듀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며, 유동성이 우수한 종목을 편입하도록 설계된 지수이다.</p> <p>주1) KOBİ Market Index는 KIS채권평가의 웹사이트(www.bond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라. 비교지수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이 투자신탁은 성장형 주식 집합투자기구로서,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여 추종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행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시 성과비교를 위한 비교지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주1)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투자자께서는 [KOSPI*95% + CD*5%]을 참조지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산출기관의 상황,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,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(세전기준) 나. 연도별 수익률 추기(세전 기준)	<p>Neo가치주증권자2[주식]</p> <p>주1) 비교지수 : (KOSPI 지수 * 90%) + (KOBİ Market Index) * 5%) + CALL 5% (2017.9.10 비교지수가 변경((없음 -> (KOSPI 지수 * 90%) + (KOBİ Market Index * 5%) + CALL 5%))되었으며, 변경 이후 측정대상기간의 비교지수만 작성하였습니다.</p>	<p>그린디지털증권자[주식]</p> <p>비교지수 내용 삭제</p> <p>주1) 비교지수: 해당사항 없음(비교지수: (KOSPI 지수 * 90%) + (KOBİ Market Index) * 5%) + CALL 5% 는 2020.08.21 기준으로 변경)</p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집합투자기구 명칭	<u>교보악사Neo가치주증권투자신탁2호[주식]</u>	<u>교보악사그린디지털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<u>박화진</u>	<u>홍기석, 이지윤</u>

<변경 전>

[별첨 1]

-운용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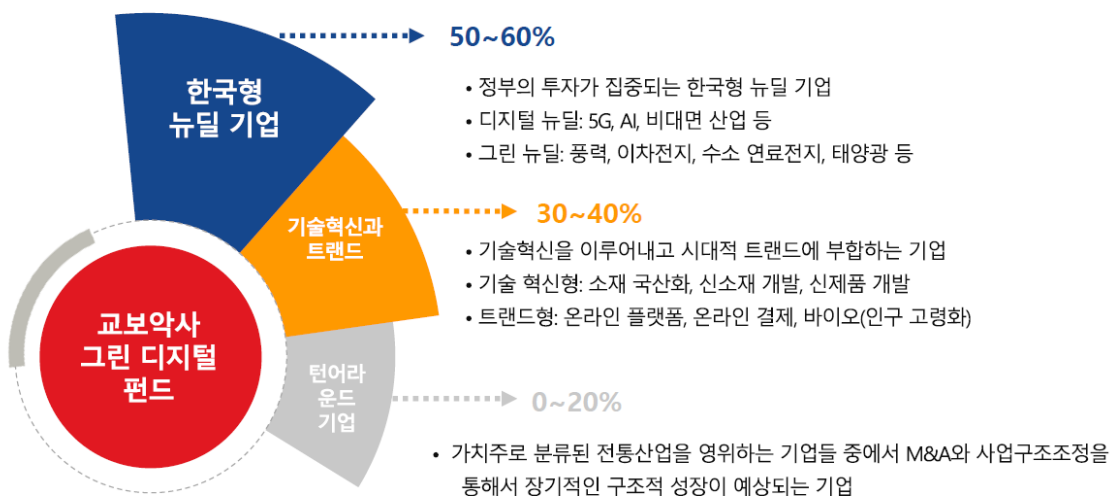


<변경 후>

[별첨 2]

▶ 운용전략

☑ 교보약사 그린 디지털 펀드 테마별 구성 전략



▶ 투자 프로세스

- 1) 향후 6개월 내에 한국형 뉴딜, 기술혁신 관련 신규로 등장하거나 혹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이벤트 및 키워드 선정
- 2) 키워드 관련 수혜주 탐방 및 관련 산업의 성장성 분석
- 3) 섹터 담당자와 추려진 수혜주 중 투자종목 선호도와 관련 리스크 점검
- 4) 편입 비중과 시기 결정
- 5) 투자종목 선발

